

추가약정서

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OO 상호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
주 소 :

담보제공자 : _____ (인)

주 소 :

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OO상호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**1주택**(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(또는 그 배우자)가 **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**으로 추가로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2조 (처분대상 주택) **채무자**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**1건의 주택**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기존 주택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**처분(명의이전 완료)**하여야 합니다.

1. 추가매수대상이 주택일 경우 **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**

2. 추가매수대상이 **분양권** 또는 **입주권** 등일 경우 추가매수대상 주택의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

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즉시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 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제 3조에 명시된 각 호의 기한까지 처분 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아니한 경우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외에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 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됩니다.

1.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제 3조에 명시된 각 호의 기한전에 처분 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아니한 경우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외에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3. 제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